

2011. 11. 29.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양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바쁘신 일정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하여 기꺼이 토론을 맡아 주신 사회자 및 토론자들에게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가히 폭발적 수준이고,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들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정형의 상향 등을 담은 관련 법률의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양형위원회에서도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한 법원의 양형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여론을 여과 없이 수렴하고자 오늘 이와 같은 공개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공개토론회는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양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 차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법관들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형기준 수정안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매우 뜻깊은 자리인 만큼 기존 법원 양형의 문제점이나 향후 개선방안에 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양형위원회에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약된 국민의 여론을 향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함에 있어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의견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기준을 만드는 데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29.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 기 수

축 사

Sentencing Commission



최근 이른바 ‘도가니 현상’ 등을 계기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때에 양형위원회가 공개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여러모로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양형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양형위원회가 만든 양형기준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론을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공개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 향후 양형위원회가 아동·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관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11. 2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우 윤 근**

I. 공개토론회 개요	11
1. 개요	11
2. 공개토론회 개최 배경	11
3. 공개토론회 의미	11
4. 공개토론회 주제	11
5. 공개토론회 참석자	12
6. 공개토론회 진행 일정	12
II.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15
1. 토론회 결산	15
2. 토론회 주요 발언 정리	15
가. 모두 발언	15
나. 성범죄 양형기준 경과 설명	15
다. 도가니 사건과 양형기준	16
라. 성폭력 피해자 조사와 2차 피해	16
마.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와 항거불능의 요건	17
바. 성범죄 양형과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17
사. 방청객 질의	18
아. 토론자 마무리 발언	22
III. 공개토론회 속기록	25
IV. 사회자 및 토론자 약력	75
[부록] 성범죄 양형기준	79

I. 공개토론회 개요



01 · 개요

- 명 칭 :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 주 최 : 대법원 양형위원회
- 일 시 : 2011. 11. 29.(화) 16:00~18:00
- 장 소 :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

02 · 공개토론회 개최 배경

- 영화 ‘도가니’ 상영을 계기로 촉발된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양형위원회가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필요
-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 및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진지한 토론의 장 마련 필요

03 · 공개토론회 의미

-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으로써,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 폭넓은 참고자료 제공
-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아동·장애인 대상 성범죄 양형에 관한 국민의 여론을 여과 없이 수렴함으로써 양형기준과 위원회 활동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계기 마련

04 · 공개토론회 주제

- 영화 ‘도가니’ 관람 여부 및 소감
- 영화 도가니가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원인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원 양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피해변상)를 양형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인지 여부

05 · 공개토론회 참석자

- 사회자 : 박상훈 변호사(연수원 16기, 법무법인 화우)
- 토론자
 - ① 공지영 소설가(소설 '도가니' 원작자)
 - ② 박영식 변호사(연수원 20기, 전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 ③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 ④ 이주원 교수(연수원 21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06 · 공개토론회 진행 일정

시간	행사 내용	비고
16:00 - 16:10	인사말씀	양형위원회 위원장
16:10 - 17:10	주제토론	사회자 및 토론자
17:10 - 17:40	자유토론	토론자 및 방청객
17:40 - 17:50	마무리	

II. 공개토론회 개최 결과



01 · 토론회 결산

- 소요시간 : 2011. 11. 29.(화) 16:00 ~ 18:30
- 방 청 객 : 양형위원회 위원 · 전문위원, 법관, 변호사, 기자, 시민사회단체 간부, 법학전문대학원생, 일반시민 등 400여 명 방청

02 · 토론회 주요 발언 정리

가. 모두 발언

- 사회자 모두 발언
 - 500명 이상의 법관들이 근무하는 대한민국 법원의 심장부에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개선하고자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임
- 공지영 작가
 - 오래전부터 개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생각을 계속 가져왔는데, 이는 법관이 너무 오래도록 남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함
 - 성범죄라는 것이 여성의 입장에서는 살인보다도 한 사람의 삶을 더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인 남성들이 느끼는 성에 대한 느낌은 상당히 다른 것 같음
 - 20살 때 개인적으로 성범죄를 당할 뻔한 사례를 예로 들고, 그 후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렸다고 함
 - 도가니 소설을 집필하게 된 배경도, 당시 피해를 당한 아이들이 원래 불안하고, 세상에 대하여 의혹과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성폭행이 그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과연 살인보다 덜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되었고, 마지막에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사회의 시스템에 대하여 굉장히 분노했었음
- 이운상 소장
 - 성범죄의 경우 실제 처벌을 받는 대상은 전체 가해자의 10%에도 못 미침.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사회에 피해를 보고하여 가해자가 제대로 죗값을 받도록 하는 데 많은 생각이 필요함

나. 성범죄 양형기준 경과 설명

- 박영식 변호사

- 재판업무를 하면서 본 현실은 소설이나 영화보다 훨씬 더 지독하다는 것을 알기에 도가니 영화나 소설을 보지 않았음
- 1, 2기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 당시 성범죄 양형기준의 최초 시행 및 수정 경과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
- 이주원 교수
- 성범죄 양형기준 시행 후에 조두순 사건 등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양형기준이 조금씩 중한 방향으로 수정되어 옴
- 현재의 양형기준 자체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고, 개별 사건에서 판사가 고려해야 할 양형의 요소들을 양형인자로 어떻게 반영할지에 관하여 검토를 하고 있음

다. 도가니 사건과 양형기준

- 사회자
- 도가니 사건의 1심과 2심 판결이 내려질 무렵에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었는지?
- 박영식 변호사, 공지영 작가
- 양형기준이 시행된 것은 2009년이고, 도가니 사건과 관련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이 2008년 7월이었으므로, 도가니 사건은 양형기준 시행 전에 판결이 선고된 것 같음
- 공지영 작가
- 피고인을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범죄예방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름
- 성범죄는 굉장히 중독성과 반복성이 강한 범죄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성범죄가 엄청나게 큰 범죄라는 인식이 너무 없는 것 같음. 성범죄가 강도나 살인만큼 굉장히 중한 범죄라는 인식을 형량을 통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함

라. 성폭력 피해자 조사와 2차 피해

- 사회자
-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는데도 조사와 처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 이운상 소장

- 성폭력 재판은 가해자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 재판이라는 생각이 들
- 아직도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남성주의적인 성향이 판단에 영향을 미쳐 조사관은 피해자에게 적당히 합의를 종용하고, 법원에서는 가해자 측 변호사가 범죄와 무관한 질문을 해도 저지하지 않는 법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함
- 2차 피해도 이러한 사회인식 수준이 재판의 과정에 영향을 미쳐 발생된 것이라고 생각함

마.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와 항거불능의 요건

- 공지영 작가
 - 장애인이든 정상인이든 성폭력 상황에서 여성에게 항거불능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함. 성폭행을 당할 상황에서 죽도록 맞아가면서 저항해야 강간이 되고 그렇지 않고 순종했다고 강간이 아니라는 것은 문제가 많음
 - 장애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워낙 주눅 들고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을 태어날 때부터 겪어서 항거하는 것이 머릿속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청각 장애인들은 예쁘고 걸음으로 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는 엄청난 핸디캡이 있음. 이런 핸디캡을 고려하지 않고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판결을 하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함

바. 성범죄 양형과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 박영식 변호사
 -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는 다른 범죄에 있어서 합의보다 법원에서 다각도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요즘 법원조사관을 통한 양형조사가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데, 충실한 양형조사를 위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주원 교수
 - 가끔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 있고, 이는 주로 집행유예와 관련된 것임. 예컨대, 의붓 딸을 수년간 성폭행했는데 합의했고, 그동안 양육하고 돌봐주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움. 이러한 점에 대한 법원의 자각이 있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오늘 같은 양형토론회를 계속해야 하고, 법정형은 계속 올라가게 될 것임
 -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와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함.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하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치료받는 등 금전적 보상이 필요하고, 우리 사회가 민사상 손해를 형사적인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어 함

의를 양형의 요소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는 열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함

-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어렵다고 봄.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 처벌불원의 의미도 알지 못함. 법정대리인이 그런 피해자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평가할 때 법관들이 아주 제한적으로 심각한 고민을 통해서 진정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 공지영 작가

- 도가니 사건 조사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고, 사회가 정말 잔인하다고 느낀 부분이 합의 부분이었음.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돈을 건네고 합의를 종용했을 때, 그 돈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인격을 한 번 더 짓밟는 그런 느낌이 너무 비참했음
- 장애인 아이를 성폭행했는데 어떻게 합의가 있을 수 있는지, 합의라는 말로 형을 감경해 주는 게 이해가 안 감. 장애인인 자식을 가진 부모는 그런 자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통인데, 국가가 위안을 해 주지 못할망정 형량까지 낮게 선고하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함
- 양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가서 십수 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이 양육한 공을 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한 판결은 너무나도 안이한 판결이었고, 그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함

● 이윤상 소장

-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합의와 관련하여 영화 도가니에서도 굉장히 국민들이 광분했는데,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함
-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금씩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어 가고 있는데, 여성운동계에서는 20년 전부터 성범죄 전반에 걸쳐 친고죄 폐지를 주장해 오고 있음. 그때 좀 더 사회에서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이러한 문제는 없었을 것임
- 친고죄 조항 때문에 스토킹에 가까운 수준의 합의종용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많음. 피해자가 합의종용이 너무 괴롭기도 하고, 합의금을 받으면 돈을 바라고 고소한 것이 아 니냐는 시각도 있어 합의금을 받지 않고 합의하는 사례도 많음.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성범죄에 있어서 친고죄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함

사. 방청객 질의

● 김성수(법률소비자연맹 운영위원장)

(1) 의견 내용

- 14살 조카가 2000년 5월에 주변 남성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후 살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음. 그 후 아이 엄마는 정신병을 앓다가 결국 자살하고 단란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남
-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가 연간 1천 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음. 이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큰 책임이라고 봄
-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형량을 높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범죄의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범죄 예방을 위하여 경찰에게 위치추적 요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도 제출되어 있음

● 조순열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청년부협회장)

(1) 질문 내용

-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합의의 순기능과 역기능으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다고 보는지?
-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집을 나가 부양을 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의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피고인 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합의를 한 경우 진정한 합의로 볼 수 있는지?

(2) 이주원 교수

- 성범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피해회복은 불가능하지만,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피고인의 반성이 피해회복에 도움이 되고, 물질적인 도움을 받아 의료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등 순기능이 있음
- 합의로 인한 순기능이 많은지, 역기능이 많은지는 법관들이 구체적 사건에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함. 우리 사법제도가 법관에게 재판권한을 준 것은 그러한 것은 제대로 따져 볼 것이라고 신뢰하고서 준 것이므로 법관이 이를 양심에 따라 제대로 따져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 마찬가지로 집 나간 부모가 갑자기 돌아와 합의를 주장하는 것도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합의인가를 법관이 제대로 따져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3) 사회자

- 결국, 합의의 문제는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성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작용하는지,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것인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음

(4) 이윤상 소장

- 법관들이 합의 의사를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 중이라고 하면 별생각 없이 몇 주 공판을 연기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피해자들은 선고를 기다리는 하루하루가 너무 힘든 시간임.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글로 써서 내라고 권유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5) 박영식 변호사

- 법원에서 인력이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가 과연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법원조사관을 활용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 조인제 학생(경북대 법학부 재학 중)

(1) 질문 내용

- 국민의 법감정 때문에 너무 형량을 높여 엄벌주의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 성범죄에 관하여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을 부가한다는 것 자체는 체계론상 맞지 않는 것은 아닌지?

(2) 박영식 변호사

- 우리는 그동안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법관의 자유재량에 따라 양형을 해 왔음. 하지만, 법관에 따라 양형의 편차가 크다는 점과 온정주의에 치우친 양형으로 인하여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 왔음
- 그래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인정한 법관의 양형재량과 온정주의 양형의 탈피라는 목적을 조화시키는 선에서 최초 성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었음. 하지만, 이후 나영이 사건 등 여론이 들끓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양형기준이 높아져 지금의 성범죄 양형기준이 살인죄만큼 높아지게 된 것임
- 이러한 엄벌주의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이 중형주의가 유래한 배경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 윤해자(성범죄 피해자 가족)

- 범죄 피해자 가족으로 자신의 딸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함. 직장 내 성폭력 살인사건인데도 단순 치정사건으로 수사를 해서 딸을 두 번 죽였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고 호소함

- 조명진 학생(경희대 재학 중)

- (1) 질문내용

- 성범죄에 관하여 사회적 책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김승모 기자(법률신문사)

- (1) 질문 내용

-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에서 피해자와 연계하여 합의를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없는지?

- 공지영 작가께서는 성범죄가 살인죄에 버금가는 중대범죄로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재판부에서 놓치지 말고 고려해야 할 양형의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 (2) 이윤상 소장

- 회복적 사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기자님께서 질문한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3) 공지영 작가

- 성폭력이나 성추행한 것이 사회적으로 너무 가볍게 평가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단순히 형량을 높게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성폭력범죄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성폭행, 특히 아동 성폭행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 심지어 정신분열이나 자기혐오가 계속되게 하는 중한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최유정 판사(서울고등법원)

-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문제와 관련하여, 법률에서는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범행 후 합의라는 정황을 무시하기는 어려움

- 성폭력 피해자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 합의를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함

- 정신적인 고통에 대하여 돈으로나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하지, 돈을 받고 합의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풍조나 시각이 문제라고 생각함

- 오늘 토론회를 보고 느낀 점은 친고죄의 합의 문제, 합의의 강요라든가, 돈을 바라고 한 것이 아니냐는 잘못된 시각의 존재, 미성년자나 장애인의 경우에 실질적인 피해자로서의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피해 변상금이 피해회복을 위해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 보호자가 진정한 보호자인지 등 과연 그 합의가 진정한 합의를 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보완하는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느꼈음

- 앞으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재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인식이 공유될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의 토론이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토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아. 토론자 마무리 발언

● 이운상 소장

- 성폭력이 마치 이 사회에서 핫 아이템 같다는 생각임. 무슨 사건이 터져야 정책이 변화되는 것은 문제임. 무슨 사건이 터지기 전에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마땅한 처벌이 내려지기 위하여 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함

● 박영식 변호사

- 성범죄를 당하고 나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성범죄의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규정짓는 인식이 더 문제라고 생각함

● 공지영 작가

- 서울구치소에서 교화위원으로 7~8년째 활동 중. 성폭행범들에게 성폭력 피해자와 함께 세미나에 참석하도록 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매우 아파하고 힘들어 했음
- 성범죄에 관하여 엄벌이라는 것이 무조건 신체를 구금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교화가 가능한 방안에 대한 연구도 충분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주원 교수

- 죄를 저지른 사람은 항상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여 신뢰받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함

● 사회자

- 여기가 법원의 심장이라고 하면 법원의 머리는 대법원이라고 생각함. 새로 취임하신 대법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소통하는 사법부의 일환으로 양형위원회에서 오늘 공개 토론회를 개최한 것 같음
-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대한민국 법원의 머리를 통해서 온 법원으로 퍼져서 단순히 양형의 문제뿐만 아니라 범죄의 예방과 색출, 사후의 치유에 이르기까지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함

III. 공개토론회 속기록



(16시 00분 개회)

▶ 최형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지금부터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내 말씀 드릴 내용은 오늘 수화통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평소보다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인 토론회 시작에 앞서 양형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기수 양형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국민의 관심을 끄는 일 중의 하나가 바로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양형이 어떤가 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사법을 가르치는 교수였는데 이렇게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이번과 같은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흔쾌히 토론을 맡아주신 공지영 작가님 이하 참석하신 여러 토론자님들, 그리고 사회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바쁘신 일과 중에서도 오늘 날씨도 그렇게 좋지 않은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개토론회는 어떤 주제발표가 있는 게 아니고 문자 그대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개토론회장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을 낸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12월 19일 날 양형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그때까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일환으로 오늘 이러한 공개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사회자님께서 사회를 잘 보셔서 토론에 참가하신 네 분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또 어떻습니까, 방청객에게도 기회를 주십니까?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물론입니다.

▶ **이기수 양형위원회 위원장**

그래서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서도 고견이 있으시면 사회자의 청에 의해서 여러분도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양형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아마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은데, 형사범죄에 대해서 법률에 정해진 형량의 범위를 저희가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각 유형별로 적절한 권고 형량범위를 확정해 주는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2007년부터 하고 있고, 2009년부터 양형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는 90% 이상의 판결이 저희 양형위원회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따라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마련한 공개토론회에서, 특히 아동·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국민이 정말 바라는 좋은 의견들이 개선되고, 그와 같은 의견을 수렴하여 저희가 좋은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 법원장님께서도 오시고, 또 양형위원님들도 오시고, 또 뒤에 보니까 대법원 관계자도 오시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많이 와주셨는데 좋은 의견 많이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최형표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

다음은 오늘 공개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실 박상훈 변호사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변호사님은 1984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시고, 같은 해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시어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하셨습니다. 1990년에 법관으로 임명되어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시다 2007년 3월에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법관직을 퇴임하시고, 변호사로 개업하셨으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박상훈 변호사님은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동안 여러 자리에서 사회자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시는 것으로도 유명하시어 이번에 저희가 공개토론회 사회자로 초빙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서도 흔쾌히 오늘 공개토론회 사회를 맡아주신 박상훈 변호사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일동박수)

그러면 지금부터는 박상훈 사회자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훈 사회자님 마이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방금 소개받은 박상훈 변호사입니다.

지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셔서 수화통역을 하고 계십니다. 혹시 방청석에서 수화통역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단 한 사람의 통역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통역을 배려해 주신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은 대한민국 법원의 심장부에 와 계십니다. 여기 서울법원종합청사는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모두 모여 있는 곳이고, 500명 이상의 법관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민국 법원의 심장부에서 아동과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양형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개토론회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토론회를 마련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의 하나는 영화 도가니입니다. 도가니 영화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또 일부는 마음이 불편할까 봐 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언제까지 눈감고 있을 수는 없고, 이제 보아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소설과 영화는 어디까지나 허구이고 창작물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고, 또 그 소설과 영화를 계기로 법률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대법원에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양형기준도 강화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개선 내용이 과연 충분한가 하는 것들을 지금 시점에서 다시 돌이켜보고, 앞으로 미래에 조금 더 나은 개선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발제자가 없습니다. 실제 제가

한 달 전에 사회자로 위촉을 받고 나서 도대체 이렇게 아무런 지침도 없고 주제도 없는 토론회를 어떻게 끌고나갈지 아주 고민이 됐고, 때로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원래 제 생각에는 역시 오늘 공지영 작가님께 제일 먼저 발언권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공 작가님은 나중에 발언권을 달라고 또 스스로 말씀을 하셔서 지금도 갈등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공개토론회라고 하는 형식이 많이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선 앞에 나와 계신 네 분의 패널들이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정도 경과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방청석에 오신 분들의 질문과 의견을 직접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서면 질의를 통해서 사회자가 대신 질의를 하는 방식을 취할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렇게 하면 공개토론회의 의미가 반감될 것이기 때문에 직접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발언권이 충분히 주어질 테니까 그때까지 1시간 정도만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씀이 길어졌는데 토론자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1천만 부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시고 영화 ‘도가니’의 원저작자이신 공지영 작가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오랫동안 성폭력 피해 여성의 인권옹호를 위해 앞장서 오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윤상 소장님을 소개합니다.

(일동박수)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고, 현재 변호사로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영식 변호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박수)

동명이인의 남성 박영식 변호사님이 아니라 아리따운 여성 변호사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법관으로 계시다가 현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이주원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동박수)

소개를 마치면서 역시 첫 발언권은 공 작가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제가 결심했습니다. 지금 460만 이상 영화관객이 동원되었고, 정말 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 주셨습니다. 그 후에 법률개정도 있었고, 행정처분도 있었고, 피해 아동들과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밝히기는 하셨지만 직접 공 작가님 스스로 '도가니' 소설을 집필하게 되신 계기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공지영 작가

예, 할 수 없이 제가 첫 발언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법원의 심장부라고 하셔서 그런지 웬만한 무대에서는 요즘에 거의 완전히 뻥뻥해져서 제가 가슴이 안 뛰는데, 아까부터 계속 떨리고 말이 어떻게 나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한말 하는데 말이 두서가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여기에 부르라고 하셨을 때 왜 부르시는지 잘 몰랐지만, 제가 법을 잘 모르는 보통 사람의 대표로서 여기 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것은 제가 비단 '도가니' 라는 작품을 썼기 때문만은 아니라 제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여성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한 사람의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기서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언제나 판결을 보면서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왜 성폭력에 관한 범죄에 대해서 저렇게 가벼운 형을 내릴까라는 것이 저의 오래된 의문 중의 하나였습니다. 도가니 역시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그곳으로 내려갔고, 그때 제가 느꼈던 가장 큰 것은 법관이 너무 오래도록 남자들의 전유물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남자들이 성을 가볍게 여긴다거나 여자들의 성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DNA적으로 여성의 성과 남성의 성의 차이에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혹시 간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깊은 의문을 늘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돌사진을 찍을 때 여자아이의 성기를 드러내는 것과 남자아이의 성기를 드러내는 터부 여부, 그 이후에 남자아이들끼리 소변을 볼 때 성기를 드러내는

것의 터부 여부, 그다음에 촉각에 의해서 어떤 해를 당하거나 시달림을 당할 때 그것이 본인의 존재에 미치는 차이, 이런 것들이 수없이 쌓이고, 쌓여서 성범죄라는 것이 사실 여성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살인보다 더 한 삶을 짓밟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고, 제 주변 여성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었지만, 성인 남성들이 느끼는 성이라는 것은 성인 여성들이 느끼는 혹은 어린아이들이 느끼는 성과 너무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가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잠시 제 경험담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이야 별로 그렇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모범생으로서 성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이 되던 어느 날 겨울 저녁에 미사를 갔다 오는 길에 저희 집이 처음 외딴곳으로 이사를 갔었는데, 제가 저녁 미사가 끝나고 혼자 밤길을 으스스한 길로 걸어오게 되었는데, 그 당시 40대 중반 아저씨가 저에게 길을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나도 천진하게 “저쪽인데요” 대답하고, 제가 길을 걸어가는 순간 제 평생 처음으로 범죄의 손아귀에 놓이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아저씨가 뒤에서 제 목을 졸랐고, 그때 드는 생각은 아무 생각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지금부터 말을 잘 들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교육도 받지 못하고, 사전지식도 없었고, 그 당시에는 성폭행, 성추행이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때였지만 제가 “예”라고 대답하려고 했는데, 너무 목을 세게 졸라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겠다는 뜻으로 고개를 아주 심하게 끄덕끄덕였죠. 그 아저씨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도대체 이 늙은 아저씨가 어린 나를 왜 끌고 가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어쨌든 뒤로 질질 끌려서 그 당시에 공사장 쪽으로 끌려 들어갔고, 눈발이 흩날리는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끌려 들어갔는데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주변을 돌아보더니 “안 되겠다”, 아마 나중에 보니까 강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되겠다. 그러면 뽀뽀나 한번 하자”라는 어이없게도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아차렸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협조해서 어쨌든 이 각목과 돌이 있는 곳에서 살아서 부모님 품으로 가야겠다는 일념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를 뒤로 끌고 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저를 돌려야 뽀뽀라도 하겠죠. 그래서 뽀뽀하려고 돌리는 순간, 저는 사실 달리기 체력장도 만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밑으로 빠져서 있는 힘을 다 해서 전철역 쪽으로 도망을 쳐서 어쨌든 저는 아주 가벼운 성추행도 당하지 않고 그 사

건은 끝났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 20살이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거의 아무런 피해도 가지 않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성적으로 자라난 성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년 반 동안 해가 지면 보호자 없이 혼자 걸어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경험이 저의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저는 지금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남자친구를 만나서 데이트할 수도 없었고, 온 세상의 모든 남성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공포였고, 그것이 제가 비록 성년이 되어서 그렇게 얻은 것이었고 저는 심지어 터치 한 번 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만약 그 사람이 잡혀서 제가 고소를 했다면 그 사람은 몇 개월의 형을 받을까, 몇 년의 형을 받을까, 제 인생을 뒤집어놓은 경험을 저에게 선사해 놓은 성적인 폭력을 그 사람이 이미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의 형을 받을까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도가니’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나이가 어러지고 이 아이들이 원래부터 불안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해서 의혹과 불신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도 없는 아이들 일 때 이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이 과연 살인보다 덜한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계속 가지고 ‘도가니’ 소설을 집필했었고, 마지막에 결국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사회의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분노했었습니다.

너무 말씀이 길었는데 죄송합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바로 빨리 들어가네요.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 그 손아귀에서 빠져 나왔는데도 1년 6개월 동안이나 큰 후유증을 앓고 그러셨네요. 마침 또 어제 한국성폭력상담소 20주년 기념으로 행사가 열렸죠. 이윤상 소장님께서 어제 행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좋은 대책이나 말씀 중에서 오늘 주제와 관련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저희가 어제 ‘성폭력 정책, 현장에서 듣다’ 라는 주제로 피해자 지원정책과 가해자 처벌정책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올해 20주년인데, 20주년을 기념해서 마련하게 된 토론회였습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정

책에 관해서는 다각도로 접근을 했지만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피해 생존자들에게 직접 설문을 받아서 지금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치밀하고 정치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후에 인터뷰나 더 많은 후속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제가 어제 가장 인상 깊게 보았던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성폭력과 관련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적인 대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성폭력과 관련한 예산이 어디에,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답변을 했을까라고 상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희가 높은 순위부터 보자면 성폭력 피해 생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나 기관을 강화하는 것, 그다음에 일반인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 그다음에 수사관, 법조인들의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는 것 등을 높은 순위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사실 성폭력 발생 이전에 예방과 안전대책에 더 많은 예산이 배당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은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성폭력 관련 정부와 정치권에서 내놓는 대책들을 보면 사실은 사후약방문식이 굉장히 많고, 여론에 편승해서 그냥 형량을 강화한다, 처벌을 강화한다는 주로 여론에 편승한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집중해서 부풀려 보도를 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이 강화된 처벌의 적용을 받는 가해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저희들이 더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율은 다른 어떤 범죄보다도 낮고, 가장 신고율이 높은 강간이나 강간미수도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론에서, 또는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되는 극단적인 형이나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 등 형의 처벌을 받는 대상은 전체 가해자의 1%도 못 미친다고 보는 게 사실 맞는 계산인 것 같습니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를 이 사회에 보고하지 못하는지, 보고를 통해서 가해자가 제대로 죗값을 받고 피해자가 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절차를 왜 밟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더 생각을 많이 해 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지금 성범죄의 예방, 그리고 이미 발생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확실한 처벌, 처벌할 때 적절한 양형기준, 엄격한 양형기준에 따른 처벌,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심

리적인 치유, 이런 전체적인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도가니 소설과 영화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여러 우선순위 중에 세 번째 정도의 지위를 차지하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순서 중에서도 약 2~3번째 정도 순서에 해당되는 양형기준, 적절한 양형, 엄격한 양형기준과 관련해서 박영식 변호사님도 전문위원을 하였고, 이주원 교수님도 전문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양형기준이 바뀌어 왔고,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박영식 변호사님.

▶ 박영식 변호사

지금 소개받은 박영식 변호사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자유로운 토론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조금 자유롭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에 걸쳐서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하는 대부분의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참여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법조인으로서 법원에서 재판도 10여 년 넘게 했었고, 변호사로 20년이 넘게 재판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오면서, 또 한편으로 여성으로서 앞에 두 분 말씀하신 것에 굉장히 공감하는 바도, 느끼는 바도 많고, 또 먼 옛날이야기이지만 직접 형사 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또 재판을 했던 경험도 있고, 사실 드릴 말씀이 다양하게 많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형기준을 마련하는 전문위원으로서, 또 이런 사건을 접하는 시각으로서 제가 가장 견지하는 시각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도가니 영화도 보지 못했고, 책도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토론회에 참가하게 되고 난 다음에 봐야 되겠구나, 해서 보려고 했더니 이미 서울에서는 상영관을 찾기가 어려워졌고, 책은 제가 아직 읽을 기회를 마련하지 못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20년 동안 재판업무를 하면서 현실은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보다 더 지독하다고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일에서 매일 부딪히는 불편한 진실을 또 영화나 소설을 통해서 보고 싶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 작가님이 말씀하셨던 경험들은 사실 여자라면 아주 작게 또는 크게 겪었을 수도 있고, 안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와 같이 근무했던 젊은 변호사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잊지 못하는데, “변호사님은 키가 크셔서 모르셨을 거예요. 작은 여자아이에게는 굉장히 위협해요. 저는 안 겪어본 일이 없어요. 딸을 낳았는데 딸이 우량아여서 너무 안심이 돼요”라고 했던 얘기, 사실은 우리가 다들 개인의 경험에 국한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많죠. 생각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는 말이 두서가 없어졌지만, 지금 사회자께서 저한테 요구하신 게 양형기준이 어떻게 변천해 왔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1차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로 7개 범죄를 선정했을 때 살인과 함께 성범죄도 포함됐었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양형기준이 2008년 후반기에 공청회를 거쳐서 발표가 됐는데, 그 해 연말에 마침 ‘나영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나영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도 성폭력범죄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거세어져 양형위원회에서는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양형기준이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그때 또다시 양형기준을 좀 더 강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의 경우에 기본 양형기준이 3~6년 범위로 설정되어 있고, 강간의 경우에는 7~10년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상해의 결과까지 있는 강제추행치상이나 강간치상 등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현재 양형기준에 따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형량범위는 아닙니다. 다만, 가중요소가 있느냐 아니면 감경요소가 있느냐에 따라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감경하게 되는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하지만, 강간의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하기가 어렵도록 현재 양형기준은 2008년 ‘나영이 사건’ 등을 거쳐서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지금 양형기준표를 가지고 ‘도가니’ 사건에 적용을 해 보니까 소설에서 똑똑한 여학생 연두의 경우에는 13세가 넘었던 것 같습니다. 13세가 넘는 장애인에 대한 강간, 연두는 그때 추행으로 아마 기소된 것 같은데, 만일 강간이 됐다고 하면 현재 양형기준에 의할 때 기본영역이 5~8년 정도가 되기 때문에 3년 이하의 경우에만 집행유예가 가능한 법률제도에 비추어 보면 합의를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것

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탕 좋아하는 아이 우리는 13세 미만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나요?

▶ 공지영 작가

5년 넘게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왔기 때문이에요.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13세 미만이었고, 나중에는 13세가 넘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13세 미만의 경우를 적용해 보니까 7~10년, 가중이나 감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 7~10년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략 살인죄의 기본형과 유사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와 같은 양형기준이 적절한지 또는 잘 지켜지고 있는지, 앞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해서 우선 조금 더 이 교수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다른 분들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 이주원 교수

저는 박영식 변호사님이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을 마칠 무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전 양형위원회에서 이루어졌던 일은 간접적으로만 알뿐 직접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말씀하신 바를 들어보니까 2008년쯤에 양형기준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조두순 사건’이 생겼을 때 성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 또 있었고, 또 무슨 사건이 생길 때마다 법원에 주어진 압력에 따라서 양형기준이 조금씩 조정되고, 또 그 조정되는 내용은 조금씩 중한 방향으로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논의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기본형 또는 범죄에 대한 형량범위를 변경시킬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끔 특별법에서 법정형 상한을 높일 때까지 높여왔고, 또 양형기준에서도 사건이 생길 때마다 반영해 왔고 해서 그 자체는 별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관이 그 양형요소들의 인자들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분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고 검토해서 수정·보완하는 부분적 미세조정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지금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두 분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진 2007년 이후에는 굉장히 엄격한 양형기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도가니 외 여러 사건들에 대한 양형, 이런 것이 양형기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건의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사건 자체는 2007년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전, 그리고 여러 가지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지만 적어도 2심 재판은 양형기준이 어느 정도 정립된 이후에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시기에 관련해서 패널들께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양형기준이 엄격하지 않은 게 문제인지, 그것을 법원이 잘 지키지 않은 게 문제인지, 이런 식의 주제 의식입니다.

소설에서는 박보현 실장으로 나오는 사람만 실형 받고, 나머지는 다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 **공지영 작가**

2009년 몇 월에 양형기준이 시행되었나요?

▶ **박영식 변호사**

2009년 상반기입니다.

▶ **공지영 작가**

그러면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은 2008년 7월의 일이기 때문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네요.

제가 아까 왜 이렇게 가벼운 죄로 취급될까라는 고민은 저는 실제로 엄벌에 처하는 것이 꼭 사회적으로 교화를 일으켜서 혹은 범죄예방을 한다는 것에는 사실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의 입장입니다만, 성폭력에 관해서만 특별히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형이 굉장히 중하다는 것은 이것이 살인죄만큼이나 중하다는 인식이, 특히 강간이나 성추행, 성폭행에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녀석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스쿠터를 무면허로 타고 무슨 일을 할 때 요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하면 형량, 판례 이런 것이 다 나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는지까지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제가 보고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측면에서 성범죄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독성, 반복성이 강한 범죄이고, 마치 마약과도 같이 아직 그런 것에 발을 들이지 않은 청소년들의 보호, 제가 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마치 내가 강도를 하거나 살인을 한 만큼의 굉장히 큰 범죄라는 인식들을 우리가 이 형량을 통해서, 아이들이 어차피 주고받는 정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식될 수 있었으면 하는 면에서 제가 굉장히 막중한 처벌을 원하는 입장인 거죠.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그러면 지금 현재의 양형기준이 대략 살인죄와 비슷한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전에 공작가님이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에서는 사형제에 대해서 폐지하는 입장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주의자는 아닌데 성범죄, 특히 아동이나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경우에는 살인죄 못지않은 정도의 양형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공지영 작가

네,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범죄라는 인식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마치 그냥 잘못 말하면 재수가 없어서 저 여자가 그때는 하고 싶어 하는 척하다가 돌아서고 나니까 나를 고소했다는 식의 아주 썩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것들이 중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을 제가 좀 가져보는 겁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조금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본다면 2차 피해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분명히 피해를 당했는데, 그것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과정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굉장히 많은 2차 피해를 일으키는 부분들에 관해서 아마 성폭력상담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소장님, 어떻습니까?

▶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공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만, 제가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도 잠깐 저희가 양형을 살펴보고, 또 최근 몇 년간 몇 차례인지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법 개정을 통해서 형벌이 굉장히 강화되었고, 양형기준도 많이 조정이 되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법정형에 따른 처벌을 가해자가 실제로 받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유무죄 판단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는 양형판단에서 범죄의 중한 정도를 판단하는 것에서 많이 양형이 좌지우지됩니다. 점차 여러 가지 인식변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늘도 저희가 상담하는 현장에서는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2차 피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2차 피해는 사실 수사나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억지로 괴롭히고 싶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법조인들도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같은 사회 시민이잖아요. 이 사회의 시민의식을 그대로 반영하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마치 어린이 성폭력이라든지 특별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공분을 하고 처벌해야 될 것 같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크게 보도되었던 모 대학교 의대생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건에서 가해자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피해자의 사생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그 가해자가 저는 분명히 어떤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서, 조치를 받아서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왜 했겠습니까? 그런 데이터를 공판과정에서 오픈했을 때 이 피해자에 대한 판단이 그 양형에 대한 판단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식의 법률적인 조언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감히 그런 행동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모 국회의원에 의해서 언론에 공표되지 않았다면 저는 예측했던 대로 그 공판은 진행됐을 것이다, 제가 법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성폭력재판은 가해자 재판이 아니라 피해자 재판이다. 시시콜콜 피해자의 성력을 문제 삼고,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고, 왜 다 큰 여자가 여행을 같이 따라갔느냐는 식의 질문이, 여러분들 자료를 보시면 의대생사건의 공판도 어떻게 진행됐는지 아마 보셨을 겁니다. 몇몇 어떤 특별한, 굉장히 여론에 관심을 받는 몇몇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국민의 공분을 사지만 사실 우리 일상에 많이 퍼져있는 굉장히 많은 사건에서는 여전히 이런 뿌리 깊은 남성주의적인 통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런 통념 때문에 조사관이 “이거 계속 진행해서 당신 인생에 도움이 되겠느냐, 적당히 합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

느냐'라는 발언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공판에서도 가해자 측 변호사가 범죄와 무관한 질문을 해도 저지하지 않는 법관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양형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이지만, 저희가 공판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런 재판을 모니터링 해 보면 사실 우리 사회 인식수준이 재판의 과정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2차 피해라는 것도 결국은 그런 통념과 편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법을 개정하거나 양형을 고치거나 하기 이전에 가해자가 잘못을 하면 분명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결국, 2차 피해도 1차 피해가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조건과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게 되면 유무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일명 도가니법이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개정된 것이 10월에 국회를 통과하고 11월 17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으로는 공소시효를 없앤 것이죠. 공소시효를 없앴으로써 아동이 나중에 성년이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그 피해를 주장하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있고, 상한을 늘려서 유기징역뿐 아니라 무기징역도 가능하도록 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신체적·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처벌을 하던 것을 바꿔서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해서 강간죄를 범한 경우'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인용된 형법상의 강간죄라는 것은 폭행·협박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신체적·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성이 폭행·협박을 당하지 않고, 예컨대 유리처럼 사탕을 사준다고 하니까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고, 하자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폭행·협박은 없었던 경우에 워낙 죄가 무겁게 규정되어 있고, 양형기준이 높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법관으로 하여금 무죄를 선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식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꼭 간단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엄벌 중에서 그 반대 측면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해서 유무죄 문제에 관한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의 일반의식 수준에 비추어서 합의를 강조하고, 그 합의한 것이 실제 양형에 크게 반영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양형에 반영한다면 ‘합의’라고 하는 것을 과연 얼마만큼 고려할 것인가, 이런 두 가지 주제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주제 중에서 순서를 가리지 말고 말씀해 주시고, 혹시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싶으시면 넘어가셔도 됩니다.

▶ 박영식 변호사

여러 가지를 사회자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생각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법원에 양형기준도 마련되어 있으나, 법원의 양형이 어떻게 보면 일반 국민이 보기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낮은 양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성범죄의 다양함, 저도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이것이 점점 얼마나 더 다양해지고, 특히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가해자들의 나이가 얼마나 많이 내려가고 있는가, 형사미성년자들이 성폭력범죄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고 있는가, 심지어 나이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 제가 보기에는 곧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범죄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양형도 매우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론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건, 그렇지 못한 사건, 그냥 묻히는 사건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 다양한 사건에 대해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굉장히 다양한 양형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항상 일정 부분, 특정 부분이 문제됐을 때 마치 그것이 대표 양형인 것처럼, 표준 양형인 것처럼 하는 부분에 오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실무에서 일을 하지만 이 성범죄의 합의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제가 10여 년 전에 지방에서 형사재판을 한 경험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서울 출신이고 그때 처음 지방생활을 해 봤습니다. 한국사회가 굉장히 안면 사회이고 좁은 사회이기는 하지만 저는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서 자유로웠는데, 지방에서 근무하게 됐을 때 지방 출신 옆에 같이 근무하던 판사님이 성범죄

합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합의 그것 별로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 동네에서는, 이런 좁은 지역에서는 성범죄 일어나면 강간해 놓고 찾아가서 너 빨리 합의해라, 안 그러면 온 동네방네 다 소문내겠다.’ 물론 그게 10여 년 전의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과연 그게 크게 달라졌을까. 그래서 그 합의라는 것도 지역별로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느냐, 대상이 누구냐, 가해자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고 또 피해자와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따라 달라져서 범조인의 단정일 수도 있습니다만, 합의 자체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성범죄에 있어서 합의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만은 좀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범죄의 합의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합의를 양형인자에서 아예 배제해야 된다, 이런 시각, 이런 주장에는 저는 반대입니다. 다만, 다른 범죄의 합의보다 성범죄의 합의는 법원에서 다각도로 심도 있게 심리하여, 어떤 배경에서 과연 합의가 됐고, 피해자가 정말 원하는 합의인지, 그것에 대한 양형조사일 수도 있고, 요즘은 양형조사관도 법원에서 실제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범죄의 합의만큼은 다른 범죄의 합의하고는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 공지영 작가

제가 ‘도가니’ 사건을 조사하면서 항거불능이나 합의에 대해서도 생각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법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거불능, ‘도가니’의 주인공들이 청각장애인이고 육체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항거불능이 인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이없는 것은 이제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그때 그 사람도 목을 졸라서 데리고 가 저를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했다면 그 사람이 저를 직접적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쩡돌을 들었던 것은 없었죠. 그런데 그 주변 자체가 공사장이었기 때문에 각목이라든가 벽돌 같은 것들이 많았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다. ‘충분히 난 여기에서 어떤 짓을 하더라도 빨리 살아서 엄마, 아빠 품에 가는 것이 내 가장 큰 목표다’ 라는 한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설사 그 사람이 저를 협박하지 않고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순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도 추정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50세가 다 된 여자로서, 심지어 성경험이 여러 번 있는 여자로서 이런 큰 방에서 아주 작은 남자 한 명이, 약간 다부지게 생긴 남자가 아무도 없고 구원의 손길도 없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너 지금부터 내 말 들어”라고 하면서 저를 위협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여자가 항거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없어요. 항거불능을 저라는 정상인에게, 나이 든 여자인 저에게 해도 저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근육량이나 이런 것으로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저는 심지어 키가 좀 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와 팔싸움을 하거나 해서 이길 능력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마치 법원에서 원하는 것은, 제가 판결을 보면, 제가 그 남자에게 죽도록 얻어터져서 거의 죽기 직전이 되면 강간이 인정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순종을 했으면 저는 별로 항거하지 않아서 화간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거꾸로 이 장애인 아이들의 경우에 워낙 주눅 들고, 겁에 질려 있는 상황을 태어날 때부터 겪었기 때문에 항거라는 것이 이 아이들 머릿속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취재를 해 보니까 청각장애인들은 생각보다 예쁘고, 굉장히 키도 크고, 아무튼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멀쩡해요. 그런데 한번은 제가 그 아이들이 참여하는 예배시간에 가서 맨 뒤에 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도 다 수화로 하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아이들을 공격하기에 얼마나 쉬운가, 재네들은 심지어 굉장히 키도 크고 저보다 덩치도 좋지만 제가 맨 뒤에 서서 지금부터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야! 거기에 있는 폭탄 다 가지고 와”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부터 너희들 조용히 들어와서 다 때려 부숴”라고 해도 절대 알아듣지 못하는 엄청난 핸디캡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초능력을 가진 인간과 우리 보통 인간의 차이만큼 하나의 감각, 하나의 장애라는 것이 엄청난 핸디캡인데,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고 일반인과 같이 취급하여 하는 판결은 정말 너무나도 가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진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발전했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경험했던 가장 후진국은 평양에 갔을 때 잠깐의 경험과 제가 유신 때 교육을 받았던 그 두 가지 경험인데, 거기에는 예외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모여”, “똑같이 구령해”, “팔, 다리 들어”, “아니면 지금 참석하고”, “아니면 나가서 조금 있다가 들어와”, 이런 것이 굉장히 후진적인 것이고, 선진적인 것은 개개인의 특성이 다 다르다는 것을 배려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개인의 특성에 맞게 맞추어 주는 여유와 에너지가 있는 것이 선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형의 기준이 굉장히 폭넓은 것이 맞죠.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는 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 발탁을

할 때 고시가 일선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을 뽑는 것 아닙니까? 아무렇게 그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뭐 하러 공부 잘하고 훌륭한 분들이 여기 들어올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섬세한 판결, 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개개인들 각자의 성숙한 인식들, 이런 것들이 집단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든 개인적인 노력에 의해서든 굉장히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데에서 성폭력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일이고, 이런 것이 아무리 반복되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 굉장히 무의미하지 않나, 박영식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A부터 Z 까지 무수한 인간의 생김새만큼 다른 경우의 수를 놓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어린이, 그리고 일반여성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인식 정도는 굉장히 중한 죄로 놓고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지금 항거불능문제는 양형문제는 아니죠. 법원에서 재판을 하실 때 유무죄의 문제로 되겠습니다만, 오늘 양형위원회에서 이렇게 공개토론회를 개최하셨으니까 이러한 유무죄에 관한 의견들도 나중에 적절한 방법으로 활용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공 작가님께서 합의에 관해서도 조금 말씀을 하실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그것은 조금 후에 기회를 드리기로 하고, 이 교수님 발언 신청하셨지요?

▶ 이주원 교수

저는 두 가지 문제를 짚고 싶은데요. 양형과 재량입니다. 왜냐하면, 폭이 주어지기 때 문이죠. 우리 사회에서 문제되는 사건들을 보면 대부분 제대로 된 양형을 하던 사건은 문제가 안 됩니다. 문제되는 것은 가끔 생기는 납득할 수 없는 양형입니다. 주로 그제 집행유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신뢰를 안 합니다. 양형이 원래 비정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다들 아시는 바이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또 양형요소도 어떤 범죄에는 30~40가지 있으니까 그것을 잘 달아서 하나의 결론을 끌어내야 되는데, ‘도가니’ 사건은 양형기준이 만들어지기 전 과거의 일이고, 당시에는 법도 친고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냥 피해자가 처벌불원만 하면 사건이 종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사건 말고도 가끔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지적장애인 딸을 장기간 성폭행한 아버지를 집행유예 해 줍니다. 집행유예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보

기에 가장 중요했다고 보는 사유는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황당한 것은 그동안 양육하고 돌봐주었다는 것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또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했는데 합의했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한 법원의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런 양형토론회를 해야 되고, 법정형은 계속 올라갈 것이고, 올라가면 결국 사회문제를 형법이라는 마지막 수단을 동원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비친고죄로 만든 것도 사실 비겁한 입법입니다. 왜냐하면, 친고죄를 비친고죄로 바꾸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형법적으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알리바이 입법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성심을 다해서 피해자도 보호하고 범죄도 억제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비친고죄로 만들어 버리고 우리는 할 일 다 했으니까 됐다, 그런 것들의 한 표현이죠. 중형주의를 자꾸 강조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 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합의는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성폭력 피해자가 원상회복이 됩니까. 원상으로는 영원히 회복이 안 됩니다. 3년, 5년, 10년 지나면 잊어버리기는 하는데, 어느 순간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또 머릿속에서 기억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렸을 때 경험을 갑자기 40이 돼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원상회복은 없습니다. 피해회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는 사실상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강제해서 받는, 본의 아니게 받는 그런 산물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피고인을 보면 반성의 기회도 줘주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피해자를 생각하면 약간 실질적으로 변상이라도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피해자한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사회가 아직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니라서 민사상 피해를 형사적인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열어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말하면 진정한 합의는 있을 수 없다. 특히 일반인보다 지능이 낮고, 지적 수준이 낮은 아동이나 청소년, 장애인, 그들은 처벌불원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법정대리인이 제대로 의사를 대변하느냐, 그런 경우보다 안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에 대한 평가를 열어 놓되 아주 제한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봐 주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합의문제에 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 보죠.
공 작가님, 아까 말씀 계속해 주시죠.

▶ 공지영 작가

제가 도가니 조사하면서 가장 눈물을 많이 흘렸고, 사회가 정말 잔인하다고 느꼈던 것이 이 합의 부분이었는데, 그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의 부모를 찾아가서 돈을 건네고 합의를 종용했을 때 그 돈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의 인격을 한 번 더 짓밟고, 그런 느낌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아이에게 성폭력은 회복될 수 없는 것이고, 누구 말대로 이미 버린 몸이고, 없는 살림에 돈 백만 원이라고 준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존심을 접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런 제도 자체가 저는 너무 잔인하다고 느껴졌고, 가장 이 부분에 저는 분노를 했던 것입니다. 아동이고, 더군다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장애인인 아이를 성폭행했는데, 어떤 합의가 있을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합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경우에 오직 합의이라는 한 마디로 사건의 처벌을 훨씬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들은 솔직히 지금도 저는 굉장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애인을 가진 부모들의 고통이 굉장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파출부 일을 하시는데, 눈먼 14살짜리 딸을 매일 데리고 파출부 집에 데리고 출퇴근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딱 한 마디를 하시더라고요. “동네에서 절대로 애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장애인 딸을 둔 것만 해도 가슴이 아프고, 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토록 큰 짐인데, 이런 장애인 여자아이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이 온 동네 불문율이 되어 버린 이 사회에서 형량까지도 이렇게 계속 작게 때린다면 글썩요, 정말 너무나도 아프고 그런 사람들을 국가가 위안해 주고, 도와 주지는 못할망정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이상하게도 가난하고 못 배워서 우리와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 속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 아이의 눈먼 모습을 보고 있는 제 가슴도 정말 엄마 못지않게 찢어져 내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그 판결에 분노했습니다마는, 양아버지가 애를 데리고 가서 십수년 동안 성추행한 것을 그동안 양육시켜준 공을 봐서 다시 돌려보낸다, 글썩요 너무나

도 안일한 판결 같았고, 그런 것에 국민들이 늘 분노하고, 더군다나 딸을 가진 엄마들, 장애인을 가진 엄마들, 부모들의 아픔은 굉장히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합의에 대해서는 영화를 통해서도 굉장히 국민들이 많이 공분했는데,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성폭력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법이 바뀌는데, 우리나라 법이 바뀌는 행태는 아동 성폭력 사건이 주목을 끌면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친고죄를 폐지합니다. 도가니 영화가 이슈화되면 또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서 친고죄를 폐지하고 공소시효를 정지시킵니다.

사실 이 친고죄 폐지는 20년 전부터 여성운동계에서 즐기차게 주장해 오던 것이고, 사실 저는 이런 마음이 안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때 저희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다면 이렇게 큰 사건이 난 다음에 뒷북치듯이 이렇게 뒤늦게 법을 개정하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을 수 있지 않았는가. 저는 성폭력범죄는 전면적으로 친고죄가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늘 강하게 하고 있는데, 사회자님께서 또 패널들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다시피 성폭력범죄가 중한 범죄라는 인식이 이 사회에 너무 약하다, 그런데 친고죄가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 친고죄는 그냥 사인 간에 합의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중한 범죄이고, 사회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인식이 아니라 그냥 사인 간에 일어난 일인데, 둘이서 적당히 화해하면 그냥 고소도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이 친고죄의 내용입니다. 물론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를 들어서 친고죄 존속을 굉장히 많은 법조인들이 강조하십니다만, 사실 현장에서는 친고죄 때문에 피해자들은 사건 이후에 굉장한 합의 종용에 시달립니다. 합의 종용에 시달리면서 그 복잡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사 가야 되고 직장 그만둬야 되고 학교를 휴학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의 스토킹에 가까운 수준의 합의 종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상담사례에는 합의금을 받지 않고 그냥 합의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합의 종용이 너무 괴로워서, 그리고 합의금 받는 것이 워낙 사회적으로 '돈을 바라고 고소한 거였어?' 이런 시각들 때문에 '내가 정말 꽃뱀 소리 안 듣고 만다. 내가 그 돈 몇 푼 안 받고 만다.' 그래서 고소 취하한다는 약속을 하면서 합의금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에 이런 합의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런 이상한 결과까지 얘기할 정도로 여성의 성을 둘러싼 편견

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저는 이 친고죄 유지를 주장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잠시 청주지법 판례를 말씀해 주셔서, 몇 년 전 일이지는 하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양육해 준 것이 양형사유가 되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구나. 성폭력범죄는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성폭력범죄도 물론 있습니다. 굉장히 적은 수를 차지합니다. 물론 경찰, 검찰 통계에서는 모르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런 사건들을 주로 신고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상담 통계에 의하면 85%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13세 미만 아동들의 50% 이상이 가족, 친족이 가해자입니다. 20세 이상 성인의 1/3이 넘는 가해자가 바로 직장관계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일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가해자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양육자의 의미, 성인들에게 직장상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관계만 생각해 보면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렇게 가까이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일어나는 범죄라는 것이 성폭력의 본질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제가 양형기준을 처음 만들 때도 그런 의견을 많이 냈었습니다. 신뢰관계를 사실 이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양육자가 피양육자를 가해했다, 사실 성폭력범죄는 바로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 일반양형인자로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가중요소가 아니냐, 그래서 특별양형인자로 이동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제가 제시하곤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세밀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기본적인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사실 법조계에 더 많이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지금 토론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만, 시간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마이크를 방청석으로 넘길까 합니다.

혹시 지금 앞줄에서 먼저 질문하실 분들이 계시나요?

그러면 질문을 하실 분이냐, 토론하실 분이 몇 분 되는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 주시죠.

현재 상태에서 대략 10명 내외로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맨 먼저 용감하게 일어나신

선생님께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함과 간단한 자기소개를 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느 분에게 답변을 듣고 싶으신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분이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의견을 말씀하실 거면 상대방 지정 없이 그냥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 **법률소비자연맹 운영위원장 김성수**

저는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나온 운영위원장 김성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범죄 피해 가족의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해 드리려고 합니다.

2000년 5월에 저희 조카가 14살이었을 때 주변의 공장 다니는 분들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하고, 살해를 당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요. 살아 있는 아이를 도자기 굽는 가마니 속에 넣고 불을 지펴 태워 죽였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그 아이 엄마는 정신병자가 되어 길거리에서 손뼉을 치고 다니면서 병원 생활을 하다가 결국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단란했던 가족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건이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15세 미만 자에 대한 성폭력이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정도면 가족적으로 2,000세대가 파괴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성 세대의 굉장히 큰 책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양형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 봤을 때 양형문제, 형량을 높인다든가, 화학적 거세한다든가, 전자발찌를 찬다든가, 이게 무슨 피해자 입장에서 도움이 되고 보상이 되겠습니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내놓는 게 임시방편으로 우범지역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순찰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성범죄, 강력범죄의 대상은 서민들입니다. 권력자라든가, 힘 있는 자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다면 이런 대책이 벌써 나왔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없는 서민들이 당하니까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경찰에게 위치요청 권한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두 달 전에 저의 와이프가 보이스피싱에 1,100만 원을 입금시켰는데요. 제가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를 세 번 했는데, 경찰에서 우리 집까지 온 거리가 3분, 5분이면 올 수 있습니다. 수서경찰서에서 일원역까지는 3분이면 올 수 있는데 한 시간 이상 걸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와서 하는 이

야기는 경찰에게 위치요청 권한이 없기 때문에 위치를 추적할 수 없어서 그랬다는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해인가요? 대구에서 중학생 집단폭행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 아이 엄마가 경찰서에 가서 아들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경찰이 하는 얘기는 우리는 위치요청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오열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경찰에게 위치 요청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동력이 강한 경찰의 손을 묶어놓고 어떻게 범죄를 예방하라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의 대선 공약에도 그런 대안, 대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위치요청 권한을 주었을 때 가장 빠르게 사고현장에 도착할 수 있다, 이런 법이 국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는데 개인 사생활 침해라고 해서 박영선 의원이 반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IT기술의 발전으로 지금 개인 위치정보는 남발되고 있기는 합니다. 국회 문방위가 전병헌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작년엔 본인 몰래 위치추적을 당한 건수가 4천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유명무실한 법안을 유독 힘 없는 서민들한테는 엄격히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제도를 하나하나 고쳐야지 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거지 사후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처방에 접근해야 된다, 진찰이 끝났으면 처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신 패널 분들 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성폭력연구소 소장님께서도 아마 저를 아실 것입니다. 저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토론회에 자주 참여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이제는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그러니까 김성수 위원장님께서서는 성폭력이나 일반범죄의 예방대책으로서 비상버튼 같은 것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해서 그 사람의 위치추적을 금방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대책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쪽의 입장은 사생활 비밀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가족으로서의 위치추적기능을 경찰에 부여하고 비상버튼을 눌러서 항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맨 뒤에 계신 분.

▶ 조순열 변호사

저는 조순열 변호사입니다.

일선에서 아동 성폭력 가족을 지원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이주원 토론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성범죄가 발생을 해서 합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합의의 역기능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입니다.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때, 물론 엄벌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가해자들의 진심 어린 사과, 그게 필요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합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지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합의의 순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비율로 보자면 순기능과 역기능 중에 어떤 게 더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견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 문제가 많은데요. 어린아이가 성폭행을 당하고 사건화가 됐는데, 집 나간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서 친권자라고 하면서 합의를 해 갑니다. 그 어머니에게 과연 아이의 진정한 대리권이 있는지, 그래서 최소한 공동친권자인 경우는 친권자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양부모의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법원에서는 정말 합의의 대리권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지 말고, 인감증명 첨부하고 가족관계증명서가 나오면 합의가 이루어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합의가 결국 집행유예의 기준이 되거나 양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친고죄인 경우는 그야말로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이 합의에 대한 입증, 그 부분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지 토론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이 교수님, 답변해 주시지요.

▶ 이주원 교수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는, 피해변상 회복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참고해야 될 순기능이 있겠지요.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또 사람에게 따라서는 반성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건 순기능이 될 겁니다. 또 반성을 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도움도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추가적인 가해 유형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진심으로 와서 반성을 하면 자기 스스로 받은 피해를 피해자 스스로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보탬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해자 본인을 용서하는 것이 될 것인데요. 자기가 자신을 용서하는데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보탬이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이러한 합의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피해로 말미암아 의료적인 도움을 받아야 될 때 사실 국가가 그것을 다 지원해 주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약간 물질적인 도움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순기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순기능이 많은지, 역기능이 많은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인 사건에서 따져 봐야 됩니다. 누가 따져봐야 됩니까? 법관들이 따져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법 제도는 법관에게 재량을 준 이유가 그것을 따져보라고 신뢰하고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이죠. 그러면 법원은 그 신뢰에 부합하게 따져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사건에 해당되고, 이 행위 요건들이 적어도 달아봤을 때 어느 쪽에 무게가 더 가는 것인가를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것은 결국 법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혹시 부모 또는 친권자 문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 이주원 교수

친부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합의한 것, 이것은 저에게 집중해서 물으신 것은 아니지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게 진정한 합의인가,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피해자를 위한 것인가, 오로지 가해자가 자기 살 궁리하려고 수단, 노력, 방편

으로서 하는 것인가를 법원에서 따져 주셔야 됩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결국, 합의의 문제는 형식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답변하신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자신을 용서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혹시 그게 무슨 뜻이신가요?

▶ **이주원 교수**

그냥 제 생각인데요. 피해를 당하면, 저는 당해 보지 않았지만 아마 사회적 약자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당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게 자책감 아니겠습니까? 사실 가해자는 다른 사람인데, 자기는 피해자인데,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위로할 수 있어야지만 진정한 회복이 된다, 회복에 가까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자책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인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나쁜 사람이고, 가해자가 저렇게 처벌을 받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하고 여러 가지 잘못을 비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저 가해자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르러야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

▶ **이주원 교수**

네.

▶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저는 재판부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아까 합의를 말씀드릴 때는 저는 친고죄 규정의 문제점을 강조하려고 드렸던 말씀이고, 합의 자체는 저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피해자의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 중 하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요. 이 합의 의사를 너무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판사님들이 반드시 판단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건을 지원해 보면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해자가 공판에서 “지금 합의 시도 중이다. 그런데 아직 금액이 서로 얘기가 아직 안 되어서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하면 판사님들은 별생각 없이 그냥 몇 주 또 공판을 연기하십니다.

피해자들이 그 선고를 기다리는 하루하루는 너무 힘든 시간이죠. 그래서 사실 빨리 마무리가 되고 마음의 정리도 하고, 자기 삶의 다음 단계도 계획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사건 지원할 때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견으로 써서 재판부에 제출을 해라, 왜냐하면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는 다 보시니까. 그런데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렇게 열심히 글로까지 써서, 한 번 공판에서 얘기했으면 됐지라는 생각을 저희가 안 할 수 없는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절대 합의를 원하지 않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해 달라, 이렇게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해자라고 하는데 어쨌든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 중인데 이만 저만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진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까 변호사님께서 친권자의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실제 몇 년 전 판례에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대신 합의한 것은 합의 효력이 없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재판부가 그 맥락을 굉장히 잘 살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정말 왕왕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합의를 했다,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합의의 의사가 있다, 없다는 것을 저는 좀 정확하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그 맥락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영식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법원은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사실 양형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아까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관의 판단이 자유재량이긴 하지만, 결국 양형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양형인자들에 대해서, 양형요인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법원이 양형기준을 마련해서 일단 지금 3년 가까이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아직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다 실시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조사도 지금 형사재판

에 있어서 시행되고 있고, 조사관도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사관을 활용하는 것이 점점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는 정말 세심히 합의경위나 합의주체가 누구인가 여러 가지를 다 살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형조사관이 이 부분에서 먼저 좀 더 활용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 **조인제 학생(경북대 법학부 재학 중)**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법학부에 재학 중인 조인제라고 합니다.

학생의 관점에서 조금 원론적인 부분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박영식 토론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모두발언하실 때 양형위원회에서 양형을 판단함에 있어서 과연 무엇을 견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이 국민의 자유권을 국가가 공권력을 통해서 침해하는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 말고도 부수적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다든가 아니면 화학적 거세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런 보안처분의 성격으로 다른 제재수단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형벌을 더 부과함으로써 중형 위주의 처벌을 하는 것이 과연 마땅한지, 이미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소급적용도 가능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형 위주의 처벌로 간다는 것은 너무 응보형적인 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박영식 변호사님께 무엇을 견지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듣고 싶다고 하셨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마 꼭 박 변호사님께만 질문하신 것은 아니고 전체 패널들이 자유롭게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엄벌주의에는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 부분에 무엇을 견지해야 하는가, 그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 조인제 학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에게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중형 위주의 처벌을 가하게 되면 양형판단에 있어서 너무 개인의 어떤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형벌은 체계적인 관점에 있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형벌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법 감정 때문에 지나치게 형량을 높인다든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을 부가한다는 것 자체 역시 체계론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판단에 있어서 살인죄와 동등한, 혹은 죄질이 중하다, 경하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네요.

엄벌주의에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부분에 관해서, 박 변호사님 답변해 주시죠.

▶ 박영식 변호사

굉장히 원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요. 양형위원회에서 제일 처음에 살인, 성범죄, 강도 등 처음에 7개 범죄를 1차적으로 양형기준 마련하는 것으로 하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조화를 이뤄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법관의 독립 하에서 양심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재판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서 기본적으로 자유재량을 판사에게 주고 있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사실 그때까지는 일용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십 년 동안 형사재판이 운영되어 왔지만, 양형기준을 마련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몇십 년 동안 형사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과가 쌓이면서 국민들이 형사재판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신, 불만, 가장 대표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양형의 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법관에 따라서 어떤 법관이 담당이었을 때는 굉장히 중형이 선고되는데, 왜 다른 법관이었을 때는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굉장히 관대한 형이 선고되느냐 하는 문제가 한 가지 대두됐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양형이 너무 온정주의다, 사실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정형에 비해서 우리나라 양형이 살인죄를 비롯해서 다 너무 낮은 것 아니냐, 사실은 이 양형의 온정주의에 대해서 저도 일응 수긍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재판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우리나라에서 살인에 대해서 무기,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굉장히 극소수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15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어 왔던 게 이전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인 범죄에 대해서.

사실 가장 중죄라고 하는 살인에 대해서 그 정도 형이 선고되어 왔기 때문에 나머지 양형들은 말씀 안 드려도 그것보다는 대부분 낮은 형으로 선고될 수밖에 없는 게 일응의 현실이었구요.

그 두 가지 문제점이 국민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형사재판이 몇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오면서 제기된 문제와 그다음에 법관이 형사소송법과 헌법에서 갖고 있는 자유재량에 의한 형사재판, 이 원칙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어느 정도는 평균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온정주의적인 양형을 탈피할 것인가, 왜냐면 그것은 통렬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한국 형사사법의 양형이 외국의 경우, 선진국들의 경우와 비교해서 전반적으로 낮은 형이 선고된다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성범죄가 살인과 비슷하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살인이 가장 대표적인 중형을 선고하는, 그리고 법정형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중형주의, 엄벌주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두순 사건이라든가, 지금 이렇게 여론이 환기될 때마다, 아까 공지영 토론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성범죄는 사실 살인에 버금가는 범죄가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범죄가 사실은 상당히 양형기준이 높아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서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후약방문적인 성격, 성범죄에 대한 예방적인 성격, 교육적 처방, 이런 것에 대한 국가 정책보다는 지금 최후적인 수단인 형법으로 양형문제로 해결하려는, 중형주의로 해결하려는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중형주의가 갖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형주의가 유래하게 된 여러 가지 배경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과연 엄벌주의가 능사인가 하는 부분은 분명히 의문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저는 법원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 하지만 엄벌주의로 가는 문제점을 법원이 최종결정권자로서 해결해야 될 책임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결국 해결 방법이 엄정한 재판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재판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무죄판결률이 굉장히 낮은 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한국의 경우 형사사법에 있어서 무죄율이 낮기도 하지만, 성범죄는 무죄율이 특별히 더 낮

습니다. 굉장히 무죄판결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갖는 것이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엄벌주의가 사실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란이 될 수 있는데, 무죄율은 낮고 대부분 유죄판결이 선고되지만, 굉장히 형은 세기 때문에 법관들은 이런 변명을 합니다. 물론 법관들이 내놓고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저는 이런 의식이 분명히 깔려 있다고 봅니다. 무죄로 확신할 수 없을 때 유죄로 하면서 형을 가볍게 하는 경향이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엄벌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 중의 하나인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재판을 엄정하게 해서 형이 지금 엄정하게 높아져 있는 만큼 정말로 재판부가 어떠한 여론에도 굴하지 않고 이 피고인의 경우에는 도저히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무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 무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유죄로 인정되는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서는 형을 엄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견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라든가, 기본적으로 저는 형법에 정해져 있는, 지금 성범죄의 경우에는 여러 특별법들에 의해서 형사사법체제가, 형벌 규정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의 원칙은 형벌법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는, 전자발찌가 결국에는 개인의 자유를 그만큼 침해하는 일종의 부가적인 형벌이라고 보이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선까지 허용될 것인지, 화학적 거세는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저는 그게 원칙일 수는 없고, 그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엄벌주의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형벌은 형벌로서 하는 것이고, 전자발찌나 화학적 거세와 같은 부가적인 2차적인 형벌들은 또 다른 형사예방적인 차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하고 이것을 같이 똑같은 형벌이니까 엄벌주의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 이주원 교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법원이 성범죄에 대해서 유무죄판단을 잘하고, 또 대부분 양형에서도 바람직한 양형을 했으나 일부 문제점이 있다, 엄벌주의는 학문적으로 범죄인의 교화개선이나 예방에 어떠한 영향을, 다시 말해서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아무런 보고도 없습

니다. 오늘 이 ‘도가니’ 소설 때문인데요, 영화화됐지 않습니까? 형법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요소가 가미된 영화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형법은 기본적으로 피해자를 위해서 있는 법이 아니고 가해자를 위해서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형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역사상으로 보면 옛날에 형법이 없을 때 다 처벌했습니다. 너무 많이 처벌하고 하니까 문명국가가 되면서 그 가해자를 합리적으로 정형화해서 처벌하려고 만든 법이거든요. 그런데 강벌주의나 엄벌주의는 그것을 다시 거꾸로 돌리는 아무런 효과도 가져오지 못하는, 확인되지도 않은 것에 의해서 그냥 입법자들이 무책임하게 하는 안타까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지적은 입법에 관한 한 강벌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최선의 사회정책은 최상의 형사정책이다.’ 라는 리스트의 말이 있습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이제 점점 시간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한두 분 정도 더 말씀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각 패널들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갑자기 한 열 분이 손을 드셨네요.

일단 여성분께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앉으신 분,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 **윤희자(성범죄 피해자 가족)**

저는 윤희자라고 하고요. 인터넷상으로 물망초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범죄 피해자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아까 성폭력센터 소장님이 성폭력 피해 생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아니고 사망자예요. 이 사망자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실을 밝혀줘야 할 주위 사람들이 다 거짓말로 진술을 하고, 법정에서 위증도 하고, 회사 사람들이 전부 푹푹 뭉쳐서 저희 딸을 사자명예훼손 하고, 저희 딸을 두 번 죽이는 수사를 하고, 범죄 범행지도 아니고 피의자 주소지도 아니고 관할구역을 어겨가면서 이 사건을 직장 내 성폭력 살인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치정사건으로 수사를 해서 저희 딸을 두 번 죽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밝히려고 하니까 경찰이 그렇게 확인된 바 없다고 했는데도 수사도 그렇고, 재판도 그렇고 제가 지금 6년 반 동안 이렇게 길에서 울고 다니고 있어요. 우리나라 도가니 영화가 이슈가 되었다면 미국에서는 체인질링이라는 영화가 100

년 전의 실화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영화의 주제와 제 사건이 너무 흡사해요. 그런데 그 미국 100년 전 실화는 사법권은 살아 있어서 그래도 나중에 진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경찰, 검찰, 이 법원에서도 사건을, 집에서 살림만 하던 주부인 제가 보아도 직장 내 성희롱이 확실한데도 실제적 진실을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명백한 증거 자료도 다 있고 하는데도, 그것을 저보다 더 많이 배우시고 저보다 더 훌륭하신 분인데 그 사실을 전부 외면하고 제가 2008년 프레스센터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훌륭하신 분 다 오셨는데,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져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저 같은 사회적 약자는 이렇게 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이렇게 경찰서, 검찰청, 법원으로 다니면서 제가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되는지, 어느 곳에서도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 살인사건에서 위증을 밝혀내고 회사 사람들 사자명예훼손을 밝혀내고, 또 살인자를 증인신청해서 위증을 또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다 밝혀진 것이 아닌가요? 그래도 법적으로 아직, 저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지금 물망초님께서 말씀하시는 사건은 아마 형사적으로는 판결이 선고가 되었는데, 그게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왜곡되어서 선고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윤희자

의도적으로 그렇게 왜곡, 은폐, 조작을 해서 수사를 했고, 그것을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자인서를 저에게 주고, 메일도 보내고, 그 살인사건 수사기록이 그냥 삼류 소설이예요. 그 수사기록 제목에 삼류 소설 제목 같이 '피해자와의 관계에 대한 수사', 제목이 그렇습니다. '피의자는 동료의 사이였다고 주장하나 내연의 관계임을 추궁하여 밝혀 예정임' 이게 수사기록이예요. 어떻게 범행동기를 밝혀야지 내연의 동기를 밝혀줬다고, 피의자는 동료의 사이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렇게 내연의 관계로 몰아가서 똑같은 날 수사기록에 다 내연의 관계 8개월, 9개월, 10개월...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팀에서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기록이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저는 어이가 없어요. 이게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고, 저는 6년 반 동안 이렇게 법원을 왔다 갔다 하고 다니고, 아마 법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 얼굴을 다 아실 겁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그럼 물망초님께서서는 자료를 이 자리에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 윤희자

네, 갖고 왔습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그러면 아마도 그 말씀을 오늘 1시간, 2시간 시간을 드려도 못할 정도로 하실 말씀이 많을 텐데요. 오늘 토론의 자리하고는 약간 주제가 다르니까 재심의 기회가 있는지 그 여부를 그 자료를 가지고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양형위원회도 어쨌든 필요하면 법률구조나 여러 가지하실 수가 있으니까, 직접은 아니지만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나오셔서 앞에 주최 측에 전달해 주시면 검토를 해서 위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재심의 기회가 있는지 나중에 검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 윤희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혼자서 계속 말씀하시면 시간이 돼서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윤희자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 사건을 단순 치정사건으로 해서 단순 살인유기만으로 처벌이 됐어요. 왜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아까 가해자를 위한 법이라고 하셨는데 피해자는 왜 그런 권리가 없나요? 왜 이렇게 왜곡은폐되는 수사를 해서,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수사를 해서 이렇게 피해자 가족을 힘들게 하고, 저는 성폭력 특별법으로 처벌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다른 분 또 질문을 받겠습니다.
물망초님은 그 자료를 앞에 주최 측에 전달해 주시면 나중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지요.

▶ **조현진 학생(경희대 재학 중)**

경희대학교 휴머니칼리지 신입 교육활동으로 온 조현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범죄의 사회적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양육자나 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시스템적인 책임으로 묻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그러면 지금 성폭력이 일어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사회 각층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것을 묻고 싶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혹시 조 선생님 이 생각하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패널들 중에서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 **조현진 학생**

각계각층의 부패도 있을 것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식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피해자가 잘못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 학생이고 그래서 전체적인 눈으로는 바라보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패널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조 선생님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학생이시군요.
지금 아주 주제가 광범위하게 가는데요. 패널 분들께서 마지막 마무리 말씀으로 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들을 때 같이 답변에 갈음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분이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그중에서 한 분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두 분이 손을 드셨네요. 먼저 드신 앞의 분께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양보하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또는 의견을 듣겠습니다.

▶ **법률신문사 김승모 기자**

법률신문사의 김승모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합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물론 피해자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합의 부분에 있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제2의 피해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 제가 생각하는 제3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의 합의를 피해 당사자들과 연계해서 하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공지영 작가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도가니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소수자, 아동이나 장애인들 소수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성범죄의 특성이 중대범죄와 버금가는데 형량도 낮고,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제는 양형의 개선 방안인데, 중형이 선고될 경우에 가장 고려해야 할, 이 부분은 반드시 재판부에서 놓치지 말고 엄두에 두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특별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원작자로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셨을 텐데, 직접 현실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을 때 오늘 느끼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합의 문제와 관련해서 제3의 공인기관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제도연구가 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이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없으면 없다고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 작가님께서 중형을 선고할 경우에 가장 고려할 부분, 특별요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원작자로서 현실에 참여하시면서 느끼신 소감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저는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이 소장님도 나중에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그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공지영 작가**

아까 이주원 교수님께서 법이라는 것은 가해자를 위한 것이지,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에 저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제가 법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법없이 살 수 있다는 말은 틀리다, 오히려 바른 사람을 위해서 법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던 저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 **이주원 교수**

오해입니다.

▶ **공지영 작가**

아까, 엄벌주의가 아니고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관한 것이 너무 가볍게 평가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있는 형량보다 더 형을 많이 때려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도 이런 것을 가벼운 범죄로 생각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었고요. 성폭력이라는 것의 특수성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사건의 피해자인 연두와 유리, 제가 두 명만 한 것이고,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보편화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둘이 대표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유리의 경우에는 지금 ‘홀터’라고 그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오지도 못하고, 어느 곳에도 적응하지 못한 채 성적 집착 같은 정신질환이 심각하게 보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유리를 만나보지 못했구요. 무엇이냐면 중3 정도, 지금 고3 정도 되었죠. 제가 취재할 당시에 중3, 중2 정도였는데, 늙든, 젊든 어떤 남자들만 보면 유혹하려고 들고 옷을 벗고,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에 빠져 있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성폭력이

대부분 가까운 사람, 특히 아동 성추행의 경우에는 거의 90%가 친척이나 인척,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이것이 왜 증범죄이나 하면 그것이 비단 폭행이 아니라 추행에 그친다 하더라도 이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이것에 대한 혐오감과 쾌감을 동시에 느끼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분열증으로 이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용소에 있거나 감옥에 갇을 때 나를 확대하는 사람을 미워하면 되는 사람은 절대로 정신질환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나 인척이나 자기를 돌봐준 양육자이거나, 자기 옆에 가까운 지인이 자신에게 이게 지금 해를 가하는 건지, 자기를 기쁘게 해 주기 위해서 이러는 건지, 사랑해서 하는 건지를 하염없이 헛갈리기 때문에 필히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평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이 성폭행, 성추행이 가지는 굉장히 특수한, 또 아동 성추행, 아동 성폭행이 가지는 굉장히 특수한 것이고,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고 그것이 심지어는 분열 그리고 자기혐오 이런 것으로 계속 지속되게 하는 범죄가, 제가 여기가 양형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복잡한 말씀을 드릴 수 없을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볍게 다루어지고 심지어 폭력도 아니고 강압도 아니고 키워줬다, 이런 식의 판결이나 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도가니’를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서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많이 그래도 회복되었지만 언제 이 아이들에게 그것이 튀어나올지, 언제 분열적으로 나올지, 결혼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지, 정말 인간이 가지는 권리 중의 하나인 어떤 성생활에 대한 기쁨을 이 사람들이 정말 누릴 수 있을지, 이것이 그렇게 작은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삶의 질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존중과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무르익고 또 양형의 기준과 함께 반영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이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6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해도 좋다는 신호를 받았습시다만, 각 패널 분들의 마무리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자리를 마칠까 합니다.

마무리 말씀 듣는 순서는 조금 전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 소장님께서 마무리 말씀에서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소장님부터 마무리 말씀을 들겠습니다.

▶ 최유정 판사(서울고등법원)

아까 질문기회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네, 진짜 마지막으로 질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순서만 양보하셨는데 제가 아예 질문 자체를 양보하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서만 양보하신 것으로 봐서 마지막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최유정 판사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하고 있는 최유정입니다.

먼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신문기사 한 줄을 보고 거기에서 우리 청각장애인들의 아픔과 슬픔을 읽어내고 그것을 수백 배의 원고지에 옮겨 적어서 이렇게 모든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낸 공 작가님의 능력에 대해서 참으로 탄복을 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저도 어떤 상황에서도 나 하나쯤이야 하고 눈감는 버릇에서 벗어나서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하는 것을 아주 실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을 조금 더 성실하고 열심히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양형토론회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는 아동과 장애인 성범죄라는 나무 하나를 보고 그 나무에서 나뭇잎의 상태, 뿌리의 상태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실제 재판을 하는 입장에서는 또 숲을 봐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사건에서 재산이 자기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재산을 피해 봤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살아갈 의미가 없다고, 그 피해 회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로 생명과 신체의 피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의 소중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다양한 보호법익의 침해, 피해와 또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호소의 외중에서 진실을 가리고 적절한 양형을 가리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는 합의에 관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판사들이 재판을 할 때 법률의 규정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분명히 법률에는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범행 후에 합의라는 점은 무시하지 못할 정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범죄 피해자, 저 또한 사소한 경험들이 있긴 한데,

그럴 때 사실 피해자 스스로 내가 잘못된 게 있지 않나 돌아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들은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치료도 받아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 비록 돈으로나마 위로를 받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돈 받고, 합의금 받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게 만드는 풍조라든가, 그런 시각이 문제이지 당당한 권리로써 내가 피해를 봤을 때는 가해자가 경제적으로나마, 재산적으로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가해자가 고통을 나누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그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당한 피해자의 권리로써의 합의가 조금 더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시사점은 친고죄에서의 합의의 부작용, 합의 강요라든가 명예훼손, 여러 가지 돈을 바라고 했다는 시각이라든가, 미성년자나 장애가 있는 분들의 경우에 실질적인 피해자로서의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 피해변상금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보호자가 진정한 보호자인지, 과연 합의 의사가 진정한지,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적인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재판을 할 때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재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이 공유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의 토론이 결코 의미 없는 토론이 아니라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토론의 자리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최유정 판사님,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패널로 한번 나오시죠.
마지막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 **이운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저는 오늘 양형위원회에서 주최했으니까요, 양형 개선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은 10%가 안 되는 사건을 저희가 보고 있다는 것, 그래서 90%가 넘는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신고하고, 보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해자가 적절하게 처벌받고 쫓값을 치르고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저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폭력이 마치 이 사회에 핫 아이템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사건, 이렇게 붙음으로써 여론이 환기되고 정책이 변화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실은 그 무슨 무슨 사건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특별히 영화화될 수도 없고, 특별히 기사화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무슨 사건이라고 붙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비상식적인 사회질서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왜 있습니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마땅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회의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사건도 대서특필 되어야만 사회가 관심을 가질 것인가”, “내 사건도 무슨 무슨 사건 이렇게 떠들어야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인가”, 심지어 어떤 피해자들은 명예훼손이라는 피소의 위협을 무릅쓰고 자기 사건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아주 절박한 이런 마지막 선택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이 하는 것은 피 토하는 절규가 아니라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모든 것이 처리되고, 대책이 마련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디 그렇게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잠시 공식적인 기관에 의한 합의에 대한 질문을 기자님께서 해 주셔서, 요즘 회복적 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성폭력범죄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논의를 하기보다 왜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해를 보고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더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제 답변으로 드리겠습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그다음에 박 변호사님.

▶ 박영식 변호사

아까 한 학생분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잘 안 읽는다, 현실이 훨씬 더 지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까지 실무에서 경험했던 현실은, 제가 왜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 ‘아,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에서 차마 못 다루는 일들이 현실에서 일어난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특히 오늘의 주

제는 아동과 장애인의 성폭력에 대한 양형 부분인데, 사회적 책임이 과연 양형기준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범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지만,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일을 하면서 통해서 얻은 간접경험이나 장애인이나 지금 저희 주제에 국한해 놓고 본다면 결국 이 성범죄의 문제는 힘의 문제입니다.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약하고 소수에 대한 범죄인데, 그게 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피해자가 피해자임을 내세우지 못하는 것, 지금 사건이 되는 것, 사실 일어나야 되는 성범죄, 성폭력, 성폭력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이렇게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아주 가벼운 추행에서부터 굉장히 심각한 것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사건화되는 것의 빈도는 1/10밖에 안 되는, 그 근처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이라는 것에 대한 개개인의 인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적인 경험에 따라서 굉장히 인식은 달라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체격 조건도 좋았고 다행히 어렸을 때 별로 그런 경험이 없었지만 여러 가지 간접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것에서 약한 아이, 체구가 좀 더 작은 아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책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까 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힘이 센 사람이 결국 아동이든 장애인이든, 그건 다 힘을 이용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성범죄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치사한 범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다들 너무나 평범한 일상인의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범죄로 발견되는 것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데, 그게 왜 피해자가 피해임을 밝히지 못하는가. 물리력으로 뭔가 제압을 당했을 때, 힘으로 제압당했을 때, 말로 제압당했을 때, 일단 나이 차이가 날 때, 자의가 있고 없고, 소수자와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에게서의 힘에 의한 제압이라는 것, 그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힘에 의해서 제압당해 본 경험이 사실 저도 많이 없었습니다만, 당할 뻔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지만. 그것은 참 자기 자신이 비하감을 느끼는, 내가 굉장히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 스스로 말하기 힘든 게 일차적인 원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 다 그것을 외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까 공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성범죄는 대부분의 경우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주변에서 일어나는데 다들 피해를 밝히기를 두려워하는 이유에는 너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추행을

당했을 때, 희롱을 당했을 때, 그리고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얼마나 다 소중한 존재인가, 자랄 때부터 소중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굉장히 알려져야 되고, 예방시켜 줘야 되고, 그리고 다 마찬가지로, 어른도 마찬가지로인데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인간의 존중에 대해서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은 성의 문제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권존중이 안 되고 있는 우리 전부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부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 답이 안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앉아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전부 다 일정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만약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밝혀서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참 싫어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 '내가 뭔가 굉장히 망가졌다', 그 생각 자체부터가 저는 이 성범죄에 대해서 다들 밝히지 않고 덮고 피해가 피해를 일으키는 인식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피해를 당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책임이 아니고 가해자가 나쁜 것이고, 나는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당당해야 되고, 이것은 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가, '무언가 너는 망가졌다', '너는 뭔가 이것으로 굉장히 고통을 받을 것이다', 물론 고통받는 게 당연하고 어느 일정 부분 상처받는 것도 맞지만, 옆에서 다들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소중한고, 너는 회복될 수 있고, 너희에게는 또 다른 인생이 있다고. 그런데 제가 성범죄에 대해서 딜레마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성범죄를 당하고 나면 이 아이 인생은, 물론 그게 피해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도와줘야 하는데, 아! 피해가 났기 때문에 끝났어. 아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살면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피해로 규정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 피해도 회복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때 좀 더 성범죄에 대해서 많이 신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회복할 수 없는 피해야 가해자를 처벌해도 회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이게 수치스러워서 어떻게 이야기해 볼 수도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성범죄에 대해서 꼭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굉장히 작은 목소리이고, 이게 소수의 목소리인 걸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가

당해 봤냐”라고 돌아올 질문들, 그 피해가 그렇게 간단한 피해가 아니다, 그런데 야까한 판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범죄를 당했을 때, 모든 피해는 항상 그 범죄를 당한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성범죄만이 살인에 버금가는, 목숨과 바꿀 만한 피해인가, 물론 이 말씀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해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성범죄를 당했어도 굉장히 소중한 삶이고 회복될 수 있는 피해다, 그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 교수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 **이주원 교수**

공 작가님 먼저 하세요.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공 작가님 먼저 말씀하시죠.

▶ **공지영 작가**

제가 서울구치소에 교화위원으로 7~8년째 다니고 있는데, 성폭력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실제로 영화 ‘밀양’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자기 아이가 유괴되어 살해 당했는데 겨우겨우 용서하고 찾아보니까 그 살인자가 나는 예수님에게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 여자가 다시 미치는 아주 문제작, 좋은 작품이지만 실제로는 유명철 같은 최교로 머리 좋은 연쇄살인범조차도 자기가 죽인 사람의 가족을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제가 그것을 보고 약간의 희망을 가진 부분도 있어요.

또 하나 제가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성폭행 범들에게 성폭력 피해자를 데려다 놓고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인간이라는 게 참 뉘지, 자기가 직접 성폭력을 행사한 그 여성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들이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되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형량을 늘리는 것에 여러 가지 엄벌이, 무조건 신체를 구금하는 것뿐 아니라 이런 교육적 시스템, 실제로 불량한 사람들, 제가 사형수를 조사했을 때도 그 사람들의 성의 관념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범들 같은 경우에 아주 기묘한 패턴을 공유하는데, 우리나라 미국이나 마찬가지로인데요. 어렸을 때 첫 성경험을 불량한 형들이 어떤 아이를 데려다 놓고 운간하는 것을 망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운간하고 사창가로 가는, 말하자면 어떤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큰 사람들이 90%가 넘습니다. 그랬는데 이런 성폭력범들에게 어떤 여자가 나와서 '네가 나를 성폭력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폭행을 당하고 이런 후유증이 있다.'는 증언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대한 효과가 굉장히 배가하는 것을 실제로 제가 구치소에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형량이라는 것이 단순히 고통을 가하는 것뿐 아니라 교육적인 시간의 연장이라든가, 교육시스템의 개발 같은 것도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형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운상 소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드라마 하나 나오고 책 나오고 무슨 사건이 나면 야단법석이 나지만 저는 이 야단법석이라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선 제 책이 많이 팔려서 좋고요. 그런 것 외에도, 이런 것에도 무감각하다면 정말 그 사회는 얼마나 죽은 사회이겠습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들끓을 때라도 이 기회를 잡아서 정말로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고칠 수 있다면, 20년 동안 아마 외쳐 오신 그것이 토대가 당연히 됐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같이 법도 잘 모르고, 사실은 별로 법원에 올 일도 없는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끝까지 들어주신 법원 관계자 분들의 열린 마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동박수)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이 교수님.

▶ 이주원 교수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정책이 중요하지만, 법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결국 범죄와 형벌을 논하는 곳인데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범죄를 저지르면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벌은 아파야 되고요, 그런데 너무 아프면 안 되죠. 너무 가벼워도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항상 정당한 처벌을 받는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열심히 하셔서 신뢰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 **사회자 박상훈 변호사**

제가 제일 처음에 이곳이 대한민국 법원의 심장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장부에서 2시간 반 동안 아주 열띤 토론,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장이 느낀 것을 머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의 머리라고 한다면 대법원이겠지요.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양승태 대법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소통하는 사법부, 그리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이기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끝까지 자리하고 계신데요. 양형위원회에서 소통하시려고 하는 노력으로 오늘 처음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살인죄 못지않게 중대한 범죄라는 말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대한민국 법원의 머리를 거쳐서 온 법원으로 퍼지고, 또 나아가서 단순히 양형의 문제뿐 아니라 성범죄를 비롯한 여러 범죄의 예방과 색출, 그리고 사후의 정신적·육체적·사회적인 치유에 이르기까지 기여할 수 있었던 자리였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까지 같이 해 주신 패널 네 분, 그리고 양형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언론인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리를 계속 지켜주신 방청객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18시 30분 폐회)

IV. 사회자 및 토론자 약력



1. 사회자



사회자 | 박상훈(朴尙勳)

-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 인천지방법원 판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
-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現] 법무법인(유한)화우 변호사

2. 토론자



토론자 | 공지영(孔枝泳)

- <창작과비평>에 소설 '동트는 새벽' 발표 문단 데뷔
- 소설 '도가니' (창작과 비평사) 등
- [現] 연세 자원봉사단 홍보대사
- [現] 시민방송(RTV) 이사
- [現] 소설가



토론자 | 박영식(朴永植)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서울가정법원 판사
- [現] 박영식 법률사무소 변호사



토론자 | 이윤상(李兪相)

- 법무부 인권옹호자문단 자문위원
- 서울 해바라기아동센터 운영위원
- [現]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여성아동위원회 위원
- [現]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토론자 | 이주원(李柱元)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 서울고등법원 판사
- 대법원 재판연구관
-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 [現]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록] 성범죄 양형기준

2009. 4. 24. 의결, 2009. 7. 1. 시행

2010. 6. 29. 수정, 2010. 7. 15. 시행

2011. 3. 21. 수정, 2011. 4. 15. 시행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강간(형법 제297조),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강간 등 상해·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치사(형법 제301조의2),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 등(형법 제305조), 상습범(형법 제305조의2), 강도강간(형법 제339조), 주거침입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제3조 제1항), 특수강도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제3조 제2항), 특수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제4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제5조),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준강제추행(성폭법 제6조),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법 제7조), 강간 등 상해·치상(성폭법 제8조), 강간 등 치사(성폭법 제9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특가법상 강도강간 재범(특가법 제5조의5)의 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I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3년 - 5년6월	5년 - 8년	6년 - 9년
3	강도강간	5년 - 8년	7년 - 10년	9년 - 13년

- ▷ 청소년 강간(위계·위력간음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¹⁾
- ▷ 강도강간죄의 특가(누범)에 해당하는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1) 2011. 4. 15. 수정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 (3유형)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 ● 윤간(2, 3유형) ● 임신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동일기회 수회 간음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간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가(누범)·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강제추행죄,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②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③ ①, 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 1년	6월 - 2년	1년6월 - 3년
2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 수강제추행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4년 - 7년
3	특수강도강제추행	5년 - 7년	6년 - 9년	7년 - 11년

-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
- ▷ 강제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또는 특수강제추행 범행인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비난 동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강제추행한 경우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 /의제강간	1년 - 3년	2년 - 4년	3년 - 6년
2	강제추행	2년6월 - 4년	3년 - 6년	5년 - 8년
3	강제유사성교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4	강간	6년 - 9년	7년 - 10년	9년 - 13년

- ▷ 위계·위력추행은 2유형에, 위계·위력유사성교는 3유형에,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 ▷ 특수강도강제추행(특수강도강제유사성교 포함)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형량 기준을 적용(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를 사용)
-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 ● 행위가 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경우(1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다수 피해자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4유형) ● 윤간(1, 4유형) ● 임신(1, 4유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 가담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동일기회 수회 간음(1, 4유형) ● 비난 동기 ●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또는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 신뢰관계 이용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02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강제추행	1년6월 - 4년	2년 - 5년	3년 - 6년
2	일반강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2년6월 - 5년	4년 - 7년	6년 - 9년
3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5년 - 8년	6년 - 9년	7년 - 11년

나.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의제강제추행/의제강간	2년6월 - 4년	3년 - 6년	4년 - 8년
2	강제추행	3년 - 6년	5년 - 8년	7년 - 10년
3	강제유사성교	5년 - 8년	7년 - 10년	8년 - 12년
4	강간	7년 - 10년	9년 - 13년	11년 이상, 무기 ²⁾

- ▷ 13세 이상 대상 강제유사성교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2유형에 포함
- ▷ 성폭법 제5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 및 성폭법 제6조의 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2유형에, 성폭법 제5조의 강간/준강간 및 성폭법 제6조의 간음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의 3유형에 각 포함함
-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의 양형인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 중 특별감경인자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와 “경미한 상해”를,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각 추가하여 해당 유형별로 사용

2) 2011. 4. 15. 수정

- ▷ 강도강간(특수강도강간 포함)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13세 이상 대상인 경우에는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13세 미만 대상인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의 형량 기준을 각 적용

특수강도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13세 미만 대상인 경우를 포함하여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형량 기준을 적용하되, 13세 미만 대상 강제유사성교행위인 경우에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중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의 형량 기준을 적용

위 경우, 그 양형인자표(13세 이상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양형인자표, 13세 미만 대상 범죄의 경우에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의 양형인자표)의 특별가중인자에 “중한 상해”를, 일반가중인자에 “중한 상해 아닌 상해”를 각 추가하여 사용

0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³⁾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강간치사 /강제추행치사	9년 - 12년	11년 - 14년	12년 이상, 무기

▷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행위가 강제추행인 경우 ● 소극 가담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구호 후송 ● 상당 금액 공탁 ● 진지한 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3) 2011. 4. 15. 수정

유형의 정의

01 · 일반적 기준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간)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부녀를 강간	형법 제297조
준강간(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형법 제299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이용 간음	성폭법 제6조

(2)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3조 제1항
흥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4조 제1항, 제3항
여자 청소년(19세 미만)을 강간/준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1항, 제4항
여자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간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5조 제1항, 제3항

(3) 제3유형(강도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가 13세 이상 부녀를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이상 부녀를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3조 제2항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8조
준강제추행(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이용 추행)	형법 제299조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 이용 추행	성폭법 제6조

2)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범 포함), 특수절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3조 제1항
흥기 등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4조 제2항, 제3항
청소년(19세 미만)을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3항, 제4항
청소년(19세 미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5항
청소년(19세 미만)에 대한 강제유사성교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5조 제2항, 제3항

▷ 19세 이상 대상 강제유사성교(형법 제298조)는 위 유형에 포함

(3) 제3유형(특수강도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3조 제2항

다.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의제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의제강제추행(13세 미만자를 추행)	형법 제305조
의제강간(13세 미만 부녀를 간음)	형법 제305조

(2) 제2유형(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를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성폭법 제7조 제3항, 제4항
13세 미만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	성폭법 제7조 제5항

(3)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강제유사성교/준강제 유사성교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4항
13세 미만자에 대하여 위계·위력으로 유사성교	성폭법 제7조 제5항

(4) 제4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 여자를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7조 제1항, 제4항
13세 미만 여자를 위계·위력으로 간음	성폭법 제7조 제5항
강도가 13세 미만 부녀를 강간	형법 제339조
특수강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13세 미만 부녀를 강간/준강간	성폭법 제3조 제2항

※ 특가(누범),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해당 범죄에 대하여 공통)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도강간(미수범 포함)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재범한 경우	특가법 제5조의5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특강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특강법 제3조

02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1)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8조, 제299조)

(2) 제2유형(일반강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법 제5조, 제6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 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8조 제2항 (성폭법 제5조, 제6조)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1조 (형법 제297조, 제299조)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8조 제1항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 13세 이상 대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행위(강제유사성교)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2유형에 포함

(3) 제3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법 제5조, 제6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8조 제2항 (성폭법 제5조, 제6조)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8조 제1항 (성폭법 제3조 제1항, 제4조)

나. 13세 미만 대상 상해/치상

(1) 제1유형(의제강제추행/의제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13세 미만 부녀를 간음(미수범 포함)하거나 13세 미란자를 추행(미수범 포함)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형법 제305조, 제301조

(2) 제2유형(강제추행)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법 제7조 제3항, 제4항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3항, 제4항)
성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5항)

(3)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법 제7조 제2항, 제4항의 강제유사성교/준강제유사성교(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4항)
성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유사성교(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5항)

(4) 제4유형(강간)

구성요건	적용법조
성폭법 제7조 제1항, 제4항의 강간/준강간(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4항)
성폭법 제7조 제5항의 위계·위력간음(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상해 또는 치상	성폭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5항)

0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강간치사/강제추행치사)

구성요건	적용법조
강간/준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미수범 포함)죄를 범한 자가 치사	형법 제301조의2
성폭법 제4조 내지 제6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법 제9조 제2항
성폭법 제7조(미수범 포함)의 죄를 범한 자가 치사	성폭법 제9조 제3항

Ⅱ 양형인자의 정의 Ⅱ

01 · 일반적 기준

가.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고 그 침해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 결박 기타 수단으로 피해자를 장기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
 - 담뱃불, 바늘, 몽둥이 그 밖의 도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침해를 가하는 행위
 - 성기 속에 이물질질을 삽입하는 행위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나.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범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이 수반되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큰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 과정을 촬영한 경우
 - 피해자의 자녀, 배우자, 부모 등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성적 유희를 위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다.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 피고인이 5인 이상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마. 임신

-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바.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 학교(교정, 교사 포함),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시설 또는 보호시설의 내부와 주변, 등하굣길, 공동 주택 내부의 계단, 승강기 등과 같이 13세 미만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 있는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그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경우를 의미한다.

사.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할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관음증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와 같이 피고인이 비록 범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욕 만족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계획적 범행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 사전 공모
 - 피해자 유인
 - 증거인멸의 준비
 - 도주계획의 사전 수립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차. 비난 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른 범행 과정에서 신고를 막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재산상의 이득을 얻기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카.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마약류 기타 약물을 투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식 및 통제능력을 상실 또는 미약하게 한 다음 범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타. 상당 금액 공탁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를 의미한다.

파.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구성요건적 가중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아래와 같은 인적 관계에 있는 피해자와의 상호 신뢰를 이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 사제(師弟)
 - 지인의 자녀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하.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거.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02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나.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0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범행 과정에 피고인이 예상치 못한 요인이 개입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의미한다.

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유족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유족과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다. 반성 없음(범행의 단순 부인은 제외)

-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후회나 죄책감을 표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Ⅰ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 또는 유족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
 -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③ 위 ①,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⁴⁾

4) 2011. 4. 15. 추가

Ⅰ 공통원칙 Ⅰ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그 결과 상한이 2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 있다.⁵⁾
-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 방법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5) 2011. 4. 15. 수정

| 다수범죄 처리기준 |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경우에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별도로 적용한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처리방법

-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I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적 범행 ●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인 경우) ● 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반복적 범행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윤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공범의 범행수행 저지·곤란 시도 ●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법 제5조가 규정하는 형태의 범행인 경우 ● 임신 ● 중한 상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 처벌불원
일반 참작 사유	재범의 위험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여 범행한 경우 ●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 진지한 반성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우발적 범행 ● 지수 ● 진지한 반성 ●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 피고인이 고령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상당 금액 공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 반복적 범행
 - 범행 내용, 처벌 전력 및 경합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수회의 간음행위가 단일범죄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우발적 범행
 -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⁶⁾

6) 2011. 4. 15. 수정

2011. 11. 29.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 결과보고서

인 쇄 2011년 12월

발 행 2011년 12월

발행처 양형위원회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로 219

전화, 02-3480-1935

팩스, 02-3476-8042

인쇄처 아텍디자인 02-2279-2214
